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889호 2024. 12. 18.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 - 2488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2. 1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구민들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정 홍보 영상 참여에 따른 출연료 지급 근거 마련(제16조의2)
 - 서구 홍보 영상 출연(서구 TV)자에 대한 출연료 지급 기준 신설
- 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지급 기준 명문화(제18조제4항 별표 2)
-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근거 법령 현행화 필요(제2조, 제11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홍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0981, 팩스 032-560-2709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구민들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정 홍보 영상 참여에 따른 출연료 지급 근거 마련(제16조의2)
 - 서구 홍보 영상 출연(서구 TV)자에 대한 출연료 지급 기준 신설
- 나. 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지급 기준 명문화(제18조제4항 별표 2)
- 다.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근거 법령 현행화 필요(제2조, 제11조)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7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소셜미디어기자”을 “소셜미디어 기자”로 한다.

9. “전자민원창구”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출연료 지급) 구청장은 구민이 서구 홍보 영상(서구 TV)에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출연할 경우 출연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별표 1의 기준”을 “별표 1”로, “상품권”을 “기념품이나 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”을 “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벤트 경품제공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대 상	방법	제공 액수 한도 (1회당)	횟수/ 제한기준
글·사진·동영상 게시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퀴즈 및 게임	정답자	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설문 및 토론	참여자	심사/ 추첨	3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정기이벤트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20만원 이하	주간/월간 정기이벤트
그 외 기타 이벤트	당첨자/ 참여자	심사/ 추첨	2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
[별표 2]

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등 지급 기준(제18조제4항 관련)

1. 지원 대상: 소셜미디어 기자
2. 지원 내용: 원고료 또는 상품권
3. 지원 횟수 및 금액: 1인 1건당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
※ 우수 소셜미디어 기자로 선정 시 월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이용자”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<u>자</u>를 말한다.</p> <p>8. (생략)</p> <p>9. “전자민원창구”란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(인터넷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.</p> <p>10.·11. (생략)</p> <p>12. “소셜미디어기자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,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제11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전자민원창구”란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“<u>소셜미디어 기자</u>”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의2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6조의2(출연료 지급) 구청장은 구</u></p>

제17조(이벤트 실시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8조(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민이 서구 홍보 영상(서구 TV)에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출연할 경우 출연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7조(이벤트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표 1 -----

기념품이나 상품권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 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의2(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.

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·운영,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부조신설 2022. 1. 11.]

의견제출서

검토구분		유	무
검토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 		
국(군·구)별 의견			
협의개요	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

성명(단체명/대표자)

2.

주 소

3. 의견

4. 기타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비
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